

'23년 「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」 사업 개요

↳ 자세한 사항은 사업 지침을 참고(사업 누리집 www.work.go.kr/youthjob에 게시)하거나
운영기관에 문의

□ 지원 대상

- (기업) 고용보험 기준 피보험자 수*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
또는 피보험자 수 5인 미만인 청년창업기업, 지역주력산업 등
 - *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
 - 참여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 개시 1년이 지난 기업은 연 매출액('21년, '22년 중 택일)이 기준 피보험자수 × 1,800만원 이상이어야 지원 가능
- (청년) 채용일 기준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~34세 청년(의무복무기간 합산 시 연장 가능)
 - 다만,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, ▲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청년, ▲고졸 이하 학력, ▲국민취업 지원제도 참여, ▲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
 - * 재학생 및 대학 졸업예정자는 지원 제외(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지원 가능)
 - * 대학 졸업후 3개월 미만자는 최종 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요건 지원 제외(6개월 이상 실업 등 요건 충족 시 가능)

□ 지원 요건

- (정규직 채용) 지원대상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
 - (지원대상 채용일) '23.1.1.~'23.12.31.
 - * 온라인 참여신청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,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,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
 - (최소 고용 유지 기간)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
 - (기타) 감원 방지, 최저임금 준수, 주 30시간 이상 근로 등
- 지원 내용: 지원대상 청년 1인당 최초 1년 월 60만원,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급(2년간 최대 1,200만원)
- ※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「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」 및 「청년내일채움공제」와 연계(중복)하여 지원 가능
- 참여 방법 : 사업 누리집(www.work.go.kr/youthjob)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참여 신청